

## 명승과 자연자원의 보호 법적인 보장과 국민의 인식을 위하여

노산 이 은 상  
<문화재위원회 위원>

문화란, 역사적 경험과 풍토자연의 배합속에서 창조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역사적 경험을 아비로하고, 풍토자연을 어미로 하고, 거기서 나오는 자식이 문화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화재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리적조건, 다시말해서 풍토자연에 대한 것을 같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풍토자연은 문화의 터전이요, 무대요, 기본조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느 의미에 있어서는, 문화와 풍토자연은 둘이 아니요 하나인 것이다.

산악지대에서는 산악적 요소를 지닌 산악문화가 생기고, 해양지대에서는 해양적 성격을 띤 해양문화가 생기는 것인만큼, 그 풍토자연을 떠나면, 그 문화가 없어져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고야 마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금수강산」이라는 별칭을 가진만큼, 산수의 아름다움과 자연자원의 풍부함으로써, 우리 국토의 특색과 사랑을 삼아왔다.

그러므로 우리 국토는 아무것보다도 아름답다는 거기에 생명이 있고, 가치가 있으며, 또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보배인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말한다면, 설사 우리가 어떠한 이유로서든지, 우리들의 명승과 자연자원을 파괴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손으로, 제 보배를 깨트려버리는 무지와 무식을 범하는 것임은 물론이요, 다시 그보다도 우리 조상들이 피로써 지키고, 흐뭇하게 물려주신, 그 고귀한 유산을, 우리 스스로 짓밟아버리는 조악에 속하는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자연은 비록 조그마한 모래알 하나도 인간의 힘으로는 만들지 못한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낼 수 없는 것이기에 자연의 위대함과 신비함이 있는 것이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또 오늘과 같이 우주과학이 극도로 발달함에까지 이르러도, 사람의 손으로 대자연의 모래알 하나를 만들어 내지는 못하는 것이다.

울퉁불퉁한 바위 한 귀퉁이를 깨트려 놓고서, 백번 뉘우친들 무슨 과학의 힘으로 그 바위 귀퉁이를 도로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며, 멋있게 구불어진 소나무 가지 하나를 상처놓은 뒤에야, 설사 다시 심는단들 그것이 하루아침에 자라날 수가 있는 것이냐.

그러므로 우리들의 「문화재」 항목 가운데서도, 인간의 지혜와, 노력과, 기술로 만들어진, 이른바 유형, 무형의 온갖 문화재들은 오히려 다시 만들어낼 수도 있을지 모르지 마는, 저 자연의 승경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라, 그런 의미에서는 명승과 자연자원이야말로 아무것 보다도 더 귀중한 유산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천부의 아름다운 풍경과 자연자원들을 이대로 우리 자손들에게 가장 값진 유산으로 넘겨 주어야 한다.

우리가 이 자연 속에서, 우리들의 정서와, 사상과, 생활을 윤택하게 해온 것과 같이, 우리 자손들에게도 자연 이대로를 전승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더 값있는 생활의 자원을 삼을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국민 하나하나를 아끼고 위해야 하는 것같이, 국토자연에 대한 보호정신을 최고도로 발휘해야하며, 또 우리 국토의 자랑인 명승 한 구역이나, 귀중한 자연자원 하나를 상치는 것은 그대로 살인행위와도 같은 것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결코 현대문명을 부정하거나, 또 거부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의 혜택을 원하고 있는 것이며, 또 그 혜택으로써 우리들의 생활을 보다 더 능률적으로 영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 현대문명이란 것이 자연에 대한 파괴적인 개발을 감행함으로써, 자연의 생태를 위협하고 있는, 그릇된 현상 앞에서는 경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현대인들의 끝없는 산업개발 의욕은 자연을 극도로 이용하려는 것에 추호도 거침이 없고, 그래서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자연파괴의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자연이란, 인간을 위해서 있다. 그러므로 자연의 모든 자원이 인간의 생활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이용되는 것이 원칙이요, 또 그것으로써 문화발전에 기여함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이용이란 말은, 어디까지나 자연을 살려서 쓰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자연을 죽이고 파괴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자연을 이용한다고 해서, 그 자연을 무절러 버린다는 것은, 마치 어리석은 장사꾼이 자본금을 활용할 줄 알지 못하고 귀중한 원금 그 자체를 잘라먹는 것과 같은 것이며, 또 미련한 농사꾼이 과일나무를 북돋우어서 열매를 따먹지 않고, 가지를 꺾거나, 뿌리까지 캐 캐어, 불을 때는 것과 마찬가지로.

더욱이 근대화란 슬로건을 잘못 인식하고, 다만 목전의 경제적인 때문에 시야가 좁아져서, 심지어 문화에 대한 해석을 지나치게 인위적인 곳에 국척시켜 놓은 착각으로, 우리들의 자연유산이 침해될 당해서는 안 될 것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분단, 전쟁의 피해, 인구의 이동과 증대등, 허다한 요인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풍경지와 거기에 깃들여 있는 자연자원등, 귀중한 보배들이 본의아닌 침해를 당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다가, 일반국민들의 자연에 대한 가치인식의 부족과, 무지식 때문에, 저도 몰래 무자비하게 파괴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을뿐더러, 다시 그 위에 금대에 와서는, 그릇된 정책에 의하여, 오히려 자연파괴의 행동이 공식화됨에까지 이른 것이야 말로,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는가.

이와 반대로, 현대문명의 침단을 달리고 있는 유럽등 선진국가에서는, 도리어 각각 자기 나라에 있는, 원상대로의 보존을 요하는 명승지나 자연자원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보호로써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에 온갖 힘을 기울이고 있음을 본다.

그래서 「국제자연 자원보존연맹」(IUCN)이라는 국제적인 기구를 만들어, 세계 각국의 명승보전과, 자연자원의 별절방지를, 인류의 공동과제로까지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현대인의 생활이 착잡해지고, 정신이 거칠어져서, 악화의 경향의 현저해지면 질수록,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나, 또는 일상생활의 긴장을 완화, 해소한다는, 지극히 간단한 공리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인간은 아름답고 순수한 명승자연을 원상 그대로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서 비로소, 명승 및 자연자원의 원형 그대로를 보존해야 할 특정지역에 대한 법률, 규정 등 강력한 시책이 요구되는 것이요, 또 그것은 결국, 우리들의 문화생활 그 자체를 보다 더 충실히 하게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문화재의 내용에 있어서, 민간이 만들어 놓은 유형, 무형의 문화재에 대해서는, 해방 후 오랜 부르짖음과 입법활동에 의하여, 그래도 아쉬운대로 일반의 인식이 성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른바 제3분과에 속하는 명승 및 천연기념물등 자연자원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것이 어떠한 성격 때문에 문화재로 취급되는 것인지조차 확실히 파악치 못하고 있다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자연은 문화의 기본자료다. 그것을 가지고 인간이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을 일컬어서 문화의 모태라고 일컫는 것이다. 아름다운 명승이 그것이요. 온갖 자연자원인 천연기념물이 또한 그것이다.

문화란, 자연에 대립된 용어로서, 인간의 노력에 의한 결정을 일컫는 것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좀더 근본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문화란, 자연의 분화, 연장, 재현이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서로 분리 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을 파괴한다는 것은 문화의 근원을 파괴하는 것이 된다. 그러한 점에서는, 인간의 손으로 만든, 모든 인위적문화재 보다도, 오히려 이 자연자원이 한층 더 귀중한 존재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유형, 무형의 문화재란 것은, 그것 하나하나에 대한, 독립된 평가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지만, 명승이나 자연자원이란 것은 어떤 특정적인 지역 전체를 상대로 하는 것인만큼, 오히려 총체적, 종합적인 평가에서 행하는 것이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의 보호도, 훨씬 더 강력한 방법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서 우리는 현행하는 관계법규를 약간 검토해볼 필요를 느낀다.

첫째 교통부에서 주관하는 현행 「관광진흥법」이란 것은, 관광객유치와, 접대와, 관광에 관한 시설 및 선전기타의 사항을 규정해서, 관광사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명승, 자연보호란 것과는 상당한 충돌을 면치 못하게 되어 있다.

물론 우리는 이 관광사업을 무시하지 않는다. 현대인의 생활이 이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또 국가적 이익으로도 얼마나 긴요한 사업인지 모른다.

그러나 그 관광사업이 관광의 원천이 되는 「관광자원」 그것을 말살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음을 알아야한다. 참으로 착각과 오산이다. 어디까지나 그 근본자원인 자연의 귀중한 원상을 살려놓은 위에서 관광사업을 구상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농림부 관장아래 있는 현행 「산림법」으로 말하면 그것의 목적과, 범위와, 성격

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나무, 대, 그리고 그것이 서있는 토지등에 관한 자원의 배양, 활용등 경제적 부면을 주안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명승지의 자연의 원상보호란 것과는 서로 그 입장이 다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또 건설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공원 설정에 있어서도, 「공원법」의 목적조항에는

「공원의 지정 또는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 풍치를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행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자연보호」와 「공원시설」이 서로 그 조화를 얻지 못하고 있다.

얼마전 건설부에서 열린 「국립공원 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연공원에 대한 기본성격과 세계적 경향」을 간단히 발언한 일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젊은 교수 한분이 거의 내 말에 반박하는 어조로

「우리 젊은 사람들은 새 학문을 배웠다. 자연이란 인간을 위해서 있다. 또 우리는 현대를 살고 있다. 단군때 있던 묵은 형태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 개발에 의해서 현대적 생활을 해야 한다」

는 뜻을 부르짖는 것이었다. 나는 급한 용무가 있어서, 그 자리를 떠나왔지만, 참으로 개탄할 「새지식」이었다.

그의 말대로 만일 「단군때의 자연」 그대로 어디 한 구석 남아 있다면, 세상에 이런 보배가 어디 있겠는가. 또 자연은 그만 두고, 만일 「단군때에 지은 초막집」이라도, 하나 어디 끼쳐 있기만 하다면, 그야말로 금은보화를 그 집채만큼 주고도 살 수 없는 보물이기도 하려니와, 세계의 학자와 관광객들이 구름때 같이 몰려들어 올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 젊은 교수(?)란 사람의 비뚤어진 지식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같은 사고방식이 널리 퍼져있는 행정관이나 일반인의 경향을 걱정하는 것이다.

공원시설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연보호를 생명으로 하는 것임을 알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의 현상으로는 덮어놓고 몰풍치한 큰길을 닦고, 살풍경한 계단식도로를 내기에 급급하며, 또 값주고 살 수 없는 귀중한 자연유산을 무절러가면서, 「케이 블 카-」를 가설해서 장사를 해보겠다는 데에 머리를 모으고 있는 것에는, 단순한 탄식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현행하는 관광진흥법이나, 산림법이나, 공원법등과 문화재보호법과의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현행 「건축법」 하나를 검토해보면 제3조에 이런 것이 있다.

「본법의 규정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보, 문화재, 민속자료,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미술품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이 조문은, 국보, 사적들은 물론이요, 명승,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지역에는 건축법의 적용이 제외되기 때문에, 자연의 경관을 상치는 무모한 건물의 설치 같은 것은 허락하지 못한다는 데에 그 본의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법규로서는 문화재보호에 아무런 지장이 없음을 발견 할 수도 있지만, 그밖의 다른 법규들은 위에서 본바대로, 서로의 마찰과 해석차이를 면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서, 무엇보다도, 법과 법 사이의 문제점을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것과, 또 그것도 우리들의 문화민족으로서의 가치와 긍지가, 풍부한 문화재를, 그리고

특히 아름다운 자연자원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기에 있는 만큼, 모든 법규의 설정 및 운영이 이것들을 본위로 하고 또 이것의 보호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문화재 위원회 자체에 있어서도, 특히 이 「명승」이라는 자연보호를 위해서, 시급히 전국적인 답사와 평가에 의하여 그것이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적극적인 조치를 가져야할 것을 제의하는 바이다.

### 열목어(熱目魚)

열목어(熱目魚)는 1773년에 노국(露國) Peter대제시(大帝時) 극동자원조사탐험대(極東資源調査探險隊)가 입수(入手)한 어족(魚族)의 표본(表本)을 Pallas라는 학자(學者)가 연구(研究)하여 발표(發表)한 어족(魚族)으로서 학명(學名)은 *Brachmystax Lenox(Pallas)*이다. 우리나라 표준명(標準名)은 열목어(熱目魚)라 하며 별명(別名)으로 참고기(평북(平北)), 연목어(蓮目魚)(지리지(地理志)), 여항어(餘項魚)(여지승람(與地勝覽)), 이항어(飴項魚)(동월조선부(董越朝鮮部))라고 불리운다. 熱目魚는 또 그 대소(大小)에 따라서 평북자성(平北慈城)에서는 팽팽이(유어(幼魚)), 댛잎(오세내외(五歲內外)), 줄티, 산티, 고드라치(일척내외(一尺內外)), 총각고드라치(일척이촌내외(一尺二寸內外)), 판치(척삼촌내외(尺三寸內外)), 열목어(일척사촌이상(一尺四寸以上))로 부르고 평북(平北) 강계(江界)에서는 열목어의 성어(成魚)를 총각이(일척삼촌내외(一尺三寸內外)), 사린총각어(일척오촌내외(一尺五寸內外))로 구별(區別)하여 부르고 있다.

어명중(魚名中) 열목어(熱目魚), 연목어(蓮目魚), 이항어(飴項魚)는 모두 열목어의 이두문(吏讀文)으로 열여항어(熱餘項魚)가 가장 오랜 어명(魚名)이다. 평북어어나 경북에서는 熱目魚를 다 같이 댛잎이라 부르고 있어 방언연구(方言研究)에 흥미(興味)있는 어명(魚名)이 되고 있다.

일부(一部) 지방민(地方民)들은 열목어(熱目魚)라는 어명(魚名)의 유래에 대하여 이 어족(魚族)은 하절(夏節)이 되면 열(熱)이 많은 적색안(赤色眼)을 냉각(冷却)시키기 위해 수온(水溫)이 낮은 하천상류(河川上流)로 역상(逆上)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실상(事實上) 열목어(熱目魚)는 담수성어족(淡水性魚族)으로서 하절(夏節)에 하천수(河川水)가 더워지면 상류(上流)로 모여든다.

열목어서식지(熱目魚棲息地)가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로 지정(指定)된 곳은 경북(慶北) 봉화군(奉化郡) 소천면(小川面)의 서식지(棲息地)와 강원(江原) 정선군(旌善郡) 부암사(浮岩寺)의 서식지(棲息地)의 두곳이다. 이중 전자(前者)는 본종분포(本種分布)의 최남한수역(最南限水域)이 된다.

열목어(熱目魚)는 시베리아를 포함(包含)한 극동아세아(極東亞細亞)의 유럽, 북미지역(北美地域)의 심산유곡(深山幽谷)에 흐르는 15. C이하(以下)의 담수계(淡水界)에 서식(棲息)하는 어족(魚族)으로서 옛날 북반구(北半球)가 빙하지역(氷河地域)이었을 때에는 우리나라 전역(全域)의 하천(河川)에 분포(分布)했던 것이 빙하지역(氷河地域)이 차츰 온대화(溫帶化)되면서 담수성어족(淡水性魚族)이 북방(北方)으로 퇴각(退却)함에 따라 본종(本種)의 일부(一部)는 향수성(向水性)을 발휘(發揮)하여 15. C이하(以下)의 담수(淡水)가 흐르는 하천(河川)의 상류(上流)에서 명맥(命脈)을 유지(維持)하게 된 것이다.